

I . 재정운영 방향

1.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
2. 2018년 재정운영 방향
3. 2018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4. 예산편성 및 심의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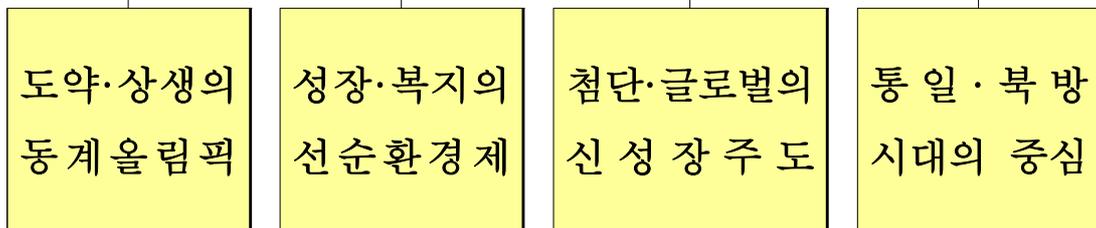
1. 도정의 비전과 발전전략

도정 비전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

도정 방침

● 인간의 존엄 ● 지역의 가치 ● 평화와 번영



2018년도 도정방향

■ 2018년은 도정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 중요한 「변곡점」 위치

-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준비해 온 올림픽을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해 → 반드시 성공시켜 강원발전의 기폭제로 활용
- 올림픽 이후에는 올림픽 유산의 효과적인 활용과 함께 도정운영의 큰 축을 ‘올림픽’에서 ‘국제강원’으로 이동시켜 강원도정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

▶ 민선6기를 거치는 동안 새롭게 시도해 온 강원도형 특성화 전략들을 성숙·확대시키는데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전」, 「핵심지표」, 「중점과제」 설정

- 비 전 : 「신강원」을 열어가는 해
- 핵심지표 : 도민소득 3만불, 고용률 60%, 관광소득 3조 5천억 원
- 중점과제 : 「올림픽 성공」 개최 + 「강원도형 특화성 전략」 가속화

- ①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로 ‘국제강원’ 실현
- ② 신강원형 경제모델 확장
- ③ 신강원형 전략산업 글로벌화
- ④ 북방진출형 신강원 브랜드 창출
- ⑤ 신강원형 직접복지 구현 및 사회안전망 확충

【 2018년 도정목표 】



2. 2018년 재정운영 방향

대외여건

- **(정부정책)**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 패러다임 대 전환
 - 일자리·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 국가 책임 강화
 - 경제 핵심은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는 성장을 촉진하는 최고의 복지로 규정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 적극 지원
 -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 강력 추진
 - 남북 간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남북이 함께 번영
 - ▶▶ 정부정책 기조에 대응, 우리 도에 접목 가능한 발전과제 도출 추진
- **(경제환경)**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2017년 2.8% 성장하고, 2018년에도 이와 비슷한 2.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 (실업률) 3.7%로 예년보다 소폭 감소 * (물 가) 1.9% 상승
 - *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율) 4%대 중반으로 하락

대내여건

- **(올 림 픽)** 2018년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전 세계의 이목이 평창으로 집중됨과 동시에 강원도는 태동 이래 가장 큰 중흥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 **(행정환경)**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국정전략에 따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등 본격 진행 예상
- **(재정환경)** 세입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겠으나, 세출은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에 따른 의무지출과 올림픽 마무리, 옥계 지구 개발 등으로 대폭 증액 될 것으로 전망

중점 편성방향

-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후 미래 먹거리,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에 집중 투자
- 새 정부 공약 6대 주요복지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전액 반영
- 실국별 예산신청 『한도제』 지속 추진으로 불요불급사업 예산부서 심의 검토·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보조금 사업 미반영
-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출자·출연 및 행사·축제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사업에 한해 예산 편성 ⇒ 미 이행 시 보통교부세 패널티

분야별 주요사업

(단위 : 억원)

① 동계올림픽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마무리

- 올림픽 참여관중 방한용품 지원 20, 시내버스 무료 운행 손실 보상 11
- 서포터즈 운영 9.6,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지원 20, 자원봉사자 운영 13
- 장애인 관람 지원 5, 동계올림픽 국내외 홍보 90, 셔틀버스 11

② 新 전략사업 올림픽 이후 미래 강원 선도

- 新 산업(수소, 탄소,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 항체, 전기자동차 등) 253
- 新 관광(신레저스포츠, 신관광로드, 스마트 관광도시, 올림픽레거시 활용 관광, 테마·체험형 글로벌 관광인프라 등) 230
- 新 녹색(수열에너지, 스마트 산림디자인, 강원도형 산촌도시, 산촌-산림특구, 산림복지, 산림자원 산업화 등) 25
- 新 농수산(청정 농산물, 기후변화 연계 고소득 과수작물, 농촌관광체험 휴양 마을, 신성장 축산업, 해양레저 클러스터 등 등) 47

③ 민생경제 튼실한 강원경제 구축

【 강원도형 일자리 창출 】

- 사회보험료 293, 강원일자리공제 70,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10
- 어르신 일자리 102, 장애인 일자리 43.5, 노인일자리 366
- 청년간호사 지원 1.2,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5

【 도민이 행복한 든든한 경제기반 구축 】

- LPG배관망 175, 지역산업 육성 112, 전통시장현대화 70.7, 세라믹 원료산업 34
- 상품권 제작 및 홍보 26.1, 전통시장지원센터 4, 전통시장 활성화 6.1
- 백년·중소기업 2, 주말 야시장 운영 3, 지방도 확포장 850

【 세계 중심으로 도약하는 글로벌 강원경제 】

- 강원무역 9.5, 국외본부 운영 12, 해외규격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 4
-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22, 해외마케팅 추진 18, 수도권 이전기업 294
- 강원 상품센터 2, 옥계지구 개발 200

④ 문화·관광·체육 강원 문화·관광·체육의 명품화, 세계화

- 문화자원 명소화 14, 강원영상산업지원 13.8, 영화종합촬영소 조성 1
-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2, 향토동물원 부지정리 8, 도민체육대회 35
- 강원FC지원 90, 강원국악예술회관 리모델링 6, 도 지정 문화재 보수 42
- 동서고속철도 매장문화재 조사 2, 강원국제민속예술축전 24.5
- 스포츠클럽 지원 1.4, • 해외판촉 및 홍보 20, 체육단체 지원 192
- 창작활동 지원 15, 직장운동 경기부 76.8

⑤ 체감복지 전 도민이 함께 누리고 만드는 체감복지 실현

【 저출산 】

- 반비어린이집 6.5, 제2 반비어린이집 25, 보육료 지원 14, 임신부 건강관리 8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12.6,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4.3, 육아종합지원센터 4
- 고위험 임신부 지원 2,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1.2,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7
-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7, 아동수당 328, 아이돌봄 서비스 60

【 고령화 】

- 폐지줍는 노인 안전관리망 0.3, 경로당 운영비 26, 노인돌봄 서비스 102
- 기초연금 4,376, 노인생활시설 265, 양로시설 22, 장사시설 5
-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3, 노인요양시설 111, 치매안심센터 166

【 기타복지 】

- 누리과정 보육료 606, 생계급여 1,732, 자활근로 163, 지역아동센터 63
- 가정양육수당 326, 영유아보육료 지원 1,082, 보육교직원 지원 537
- 장애인 거주시설 275, 농어촌보건소 31, 국가예방접종 128

⑥ 농·산·어촌 고소득 농산어업, 잘사는 농산어촌 건설

- 기업형 새농촌 마을 63, 논농업 경영안정 직불금 8.6, 고령농업인 지원 2.3
- 친환경 학교급식 242, 씨감자 생산 대체포장 40, 씨감자 산지유통 시설 15
- 오륜벼 가공시설 0.9, 농촌테마공원 22, 외국인근로자 0.9, 지역특화사업 3.6
- 무허가 축사 양성화 1.5, 농업기술원 이전조성 70, 강원산나물 한마당 2
- 산불예방 이통장 앰프 지원 3.6, 연안침식방지 45, 어업용 면세유 23

⑦ 소방·안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구현

【 소방분야 】

- 소방청사 증개축 149, 노후 소방차량 130, 의용소방대 활성화 56, 소방학교 13
- 119구급차량 32, 노후 구조·통신·구급장비 28, 소방헬기 예비부품 7.3
- 노후 개인보호장비 25,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6, 소방보조인력 양성 16
- 소방청사 시설개보수 5.8, 화생방 장비 보강 14

【 안전분야 】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27,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222, 재해위험 저수지 7
-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17, 재해취약 지방어항 64, 교통안전시설 2.5
- 방호울타리 21, 하천재해예방 290, 국가하천 유지보수 30, 소하천 정비 147

3. 2017년도 달라지는 주요 예산제도

1 기준경비 개선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도입 【별표 1】

- 지방의회관련 기준경비 3개 통계목*에 대해 각각의 기준액을 제시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 3개 통계목 기준경비에 대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합산한 금액을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현 행	개 정
<p>【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u>< 신 설 ></u></p>	<p>【별표 1】 지방의회 관련 경비 <u>1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원국외여비 <u>3개 통계목</u> ○ (총액한도 산정방법) $\{ \text{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297) + (\text{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 + 0.176) + (\text{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times (1+0.05)) \}$ ○ <u>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u>

현 행	개 정						
<p style="text-align: right;">※ 최초 2018~2021년 적용</p> <p>2.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를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p> <p>-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p> <p>② <u>기준액</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편 성 기 준 (연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도</td> <td style="text-align: center;">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군·자치구</td> <td style="text-align: center;">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td> </tr> </tbody> </table> <p>③ <u>증액편성</u> : 최근 3년간 의정활동 실적 <u>평균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u></p> <p>* <u>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이란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의 의정활동실적 증가율 평균</u></p> <p>- <u>의정활동실적 : (회기일수*0.5) + (안건 처리실적*0.5)</u></p>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p> <p>② <u>기준액(시·도)</u> (단위 : 천원/월)</p>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p>※ 최초 2018~2021년 적용</p> <p>2.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p> <p>1. 의정운영공통경비</p> <p>① (현행과 같음)</p> <p>-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 예산편성</p> <p>※ <u>위탁교육비는 신설되는 <205-07 의원 역량개발비> 과목에 계상</u></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 <u><표 삭 제></u></p> <p>③ <u><삭 제></u></p> <p>2. 의회운영업무추진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 <u><표 삭 제></u></p>
구 분	편 성 기 준 (연간)						
시·도	의원 1인당 6,1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2,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시·군·자치구	의원 1인당 4,800천원 (예결특위 위원 1인당 1,000천원 별도 계상 가능)						

현 행				개 정
구 분	의 장	부의장(1인당)	상임위원장(1인당)	
서울·경기	5,300	2,600	1,600	- <삭 제>
기타 시·도	4,200	2,100	1,300	
<p>-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단에 대한 기준액은 행정자치부 기준액(기타 시·도)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통보</p> <p>※ <신 설></p>				<p>※ 단,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지역단위 등 의장협의회(임의협의회)의 회장 단체인 경우 최근 3년간 의장업무추진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의 30%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p> <p>※ _____ _____ 예산편성액을 _____</p>
<p>※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액을 적용 계상 가능</p>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3.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p>① 경비성격 : 지방의원의 공무상 여행 및 국외연수를 위한 여비</p> <p>② 편성기준 : 의원 정수×2,000천원 (기준액)</p> <p>-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특성에 따라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p> <p>- 예외 : 아래의 예외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연간 편성한도액의 30 퍼센트 범위내에서 추가편성 가능 (이하 생략)</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u></p> <p>- <삭 제></p> <p>- (현행과 같음)</p>

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율권 부여 【별표 2】

-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로 기준액을 구분·편성하였으나
- 자치단체 유형별·직위별 금액기준을 폐지하고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

현 행	개 정
<p>【별표2】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p> <p>① <u>편성방법 : 아래의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고, 집행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름</u></p> <p>※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p> <p>○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의 규정에 위반되게 설치한 기구에 대해서는 편성 불가</p> <p>- <신 설></p>	<p>【별표2】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p> <p>① <u>편성방법</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총액한도액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하되</u> - <u>기관운영 취지에 맞게 시도 3급 (국장급)이상, 시군구 4급 이상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u>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u>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 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u></p>

현행			개정																																																			
<p>②-1 시·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년)</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기준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장· 도지사</td> <td>서울, 경기</td> <td>277,200</td> <td rowspan="4"></td> </tr> <tr> <td>부산, 대구, 인천</td> <td>198,000</td> </tr> <tr> <td>기타 시·도</td> <td>167,200</td> </tr>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133,000</td> </tr> <tr> <td rowspan="4">부시장· 부지사</td> <td>서울, 경기</td> <td>193,600</td> <td rowspan="4"></td> </tr> <tr> <td>부산, 대구, 인천</td> <td>138,600</td> </tr> <tr> <td>기타 시·도</td> <td>116,600</td> </tr> <tr> <td>세종특별자치시</td> <td>93,000</td> </tr> <tr> <td rowspan="3">기획관리 실장</td> <td>서울, 경기</td> <td>24,200</td> <td rowspan="3">시·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td> </tr> <tr> <td>부산, 대구, 인천</td> <td>13,200</td> </tr> <tr> <td>기타 시·도</td> <td>11,000</td> </tr> <tr> <td rowspan="2">시·도 출장소</td> <td>출장소장</td> <td>22,600</td> <td rowspan="2">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 는 출장소에 한함</td> </tr> <tr> <td>부소장</td> <td>7,900</td> </tr> <tr> <td rowspan="2">시·도국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 도감사위원장)</td> <td>2급이상</td> <td>9,900 (11,000)</td> <td rowspan="2">▶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 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 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td> </tr> <tr> <td>3급이하</td> <td>6,600 (7,700)</td> </tr> <tr> <td rowspan="3">시·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청장)</td> <td>2급</td> <td>9,900</td> <td rowspan="3">▶도 농업기술원 국장·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 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 센터소장 ▶室課단위의 하부조직 이 있는 4급 보조기 관을 대상으로 지차 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 급이 '5급 또는 농 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 역중, 소장밑에 과 장·담당관이 있는 농 업기술센터 소장</td> </tr> <tr> <td>3급</td> <td>6,600 3,300</td> </tr> <tr> <td>4급</td> <td>(4,400)</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액	비고	시장· 도지사	서울, 경기	277,200		부산, 대구, 인천	198,000	기타 시·도	167,200	세종특별자치시	133,000	부시장· 부지사	서울, 경기	193,600		부산, 대구, 인천	138,600	기타 시·도	116,600	세종특별자치시	93,000	기획관리 실장	서울, 경기	24,200	시·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부산, 대구, 인천	13,200	기타 시·도	11,000	시·도 출장소	출장소장	22,6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 는 출장소에 한함	부소장	7,900	시·도국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 도감사위원장)	2급이상	9,900 (11,0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 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 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3급이하	6,600 (7,700)	시·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청장)	2급	9,9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 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 센터소장 ▶室課단위의 하부조직 이 있는 4급 보조기 관을 대상으로 지차 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 급이 '5급 또는 농 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 역중, 소장밑에 과 장·담당관이 있는 농 업기술센터 소장	3급	6,600 3,300	4급	(4,400)	<p>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p> <p>< 표 ②-1 ~ ②-3 삭제 ></p> <p>② 총액한도 산정방법</p> <p>○ 행정운영경비의 일정비율을 적용 총액한도 산정</p> <p>-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0.0024(세종 0.0049)</p> <p>-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7년 ~'15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 ×0.0035</p> <p>※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p> <p>* 광역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1+0.014)</p> <p>*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1+0.003)</p>
구분	기준액	비고																																																				
시장· 도지사	서울, 경기	277,200																																																				
	부산, 대구, 인천	198,000																																																				
	기타 시·도	167,200																																																				
	세종특별자치시	133,000																																																				
부시장· 부지사	서울, 경기	193,600																																																				
	부산, 대구, 인천	138,600																																																				
	기타 시·도	116,600																																																				
	세종특별자치시	93,000																																																				
기획관리 실장	서울, 경기	24,200	시·도 의회사무처장과 도 농업기술원장 포함																																																			
	부산, 대구, 인천	13,200																																																				
	기타 시·도	11,000																																																				
시·도 출장소	출장소장	22,600	3급이상을 소장으로 하 는 출장소에 한함																																																			
	부소장	7,900																																																				
시·도국장 (소방본부장, 특별자치시· 도감사위원장)	2급이상	9,900 (11,000)	▶공무원교육원장 포함 ▶기획관, 감사관, 공보 관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 기관 포함(단, 하 부조직이 없는 직위는 지급 제외)																																																			
	3급이하	6,600 (7,700)																																																				
시·도 사업소장 (소방서장, 특별자치도 자치경찰청장)	2급	9,900	▶도 농업기술원 국장· 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 장 ▶특별자치도 농업기술 센터소장 ▶室課단위의 하부조직 이 있는 4급 보조기 관을 대상으로 지차 체가 직접 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직 급이 '5급 또는 농 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 역중, 소장밑에 과 장·담당관이 있는 농 업기술센터 소장																																																			
	3급	6,600 3,300																																																				
	4급	(4,400)																																																				
<p>※ 국장급 보조기관을 제외한 본청 과장급, 전문위원 등 지방 4급에 대하여는 편성 불가</p>																																																						

현 행

개 정

②-2 시·군·자치구

(단위 : 천원/년)

구 분		기준액	비 고
시	시장	가군 79,200 나군 58,300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110,000
	부시장	가군 56,100 나군 40,700	수원, 성남, 창원, 용인, 고양, 청주 77,000
	출장소장	18,700	
	실·국장(3·4급)	3,300	국이 없는 시의 기획·감사 업무담당 4급 실장포함
군	군수	가군 52,800 나군 39,600	
	부군수	가군 36,300 나군 27,500	
	실·국·과장	3,300	4급 실·국·과장에 한함
자치구	구청장	서울 78,100 기타 58,300	
	부구청장	서울 56,100 기타 40,700	
	국장	3,300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시장 66,000 부시장 56,100 실·국장(4급) 3,300		
일반구	구청장 26,400 부구청장 18,700		
사업소장 (4급)	3,300	▶농업기술센터소장 직급이 '5급 또는 농촌·생활지도관'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역 중, 소장 밑에 과장·담당관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②-3 읍·면·동장 등

(단위 : 천원/년)

구분	기준액	비고
인구 3만 미만	6,600	적용기준일 : 전년도 9월30일
인구 8만 미만	7,900	
인구 8만 이상	9,200	
119안전센터장	1,300	※ 종전 소방파출소장

※ 다만, 복지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자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은 자치단체별

현 행	개 정
여건에 따라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3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인당 단가구간 적용방식 명확히 규정【별표 2】

-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액을 5개 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액을 제시하였으나
- 자치단체별로 적용방식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등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산정방식을 보다 명확히 규정

현 행	개 정																						
<p>【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p> <p>④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u><신설></u></p> <p>- 시·도, 시·군·자치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본청, 의회사무기구, 시·도 소방본부</p> <table border="1"> <thead> <tr> <th>정 원</th> <th>100명 까지</th> <th>101~ 300명</th> <th>301~ 600명</th> <th>601~ 800명</th> <th>801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 기준액</td> <td>80,000원</td> <td>60,000원</td> <td>45,000원</td> <td>30,000원</td> <td>15,000원</td> </tr> </tbody> </table> <p>※경기도 제2청사, 강원 환동해본부 포함</p> <p>- 시·도 및 시·군· 자치구의 출장소 및 사업소, 소방서, 일반시의 구, 읍·면·동(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읍·면·동 포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정 원</th> <th>100명 까지</th> <th>101~ 400명</th> <th>401~ 1,000명</th> <th>1,000명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인당 기준액</td> <td>40,000원</td> <td>30,000원</td> <td>25,000원</td> <td>20,000원</td> </tr> </tbody> </table> <p>-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은 지급할 금액만큼 기준경비에 추가하여 편성할 수 있음(단, 법령에서 정한 소방공무원의 특별위로금 목적 이</p>	정 원	100명 까지	101~ 300명	301~ 600명	601~ 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정 원	100명 까지	101~ 400명	401~ 1,000명	1,000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p>【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p> <p>④ 기준액(1인당 연간금액) <u>※ 기준액 산정은 정원 구간별 누적 산정</u></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정 원	100명 까지	101~ 300명	301~ 600명	601~ 800명	801명 이상																		
1인당 기준액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정 원	100명 까지	101~ 400명	401~ 1,000명	1,000명 이상																			
1인당 기준액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현 행	개 정
외로 집행할 수 없음)	

④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초과 편성 자율성 부여 【별표 2】

- 자치단체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상한액 산정 및 그 범위 내에서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하고,
 - 특별한 수요(국가단위 행사, 재난 지역 선포 등)발생시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하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p>【별표 2】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p> <p>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u>행정안전부(시·군·구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는 시·도)와 협의를 거쳐 증액 편성</u></p>	<p>【별표 2】 2. 시책추진업무추진비</p> <p>③ 증액편성 : ----- ----- -----<u>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 편성 가능</u></p>

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복수직 편성 대상 추가 【별표 2】

- 중앙부처와는 달리 자치단체의 복수직위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중앙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2호)」에 ‘사실상 해당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복수직위에 대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p>【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p> <p>① 경비성격 (생략)</p> <p>② 기준액 (생략)</p> <p>주) 1)~8) (생략)</p> <p>9) <신설></p>	<p>【별표 2】 4. 직책급업무수행경비</p> <p>① 경비성격 (현행과 같음)</p> <p>② 기준액 (현행과 같음)</p> <p>주) 1)~8) (생략)</p> <p>9)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복수직 3급은 월 50만원, 무보직 4급은 월 15만원을 편성 가능</p>

6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세분화 【별표 2】

-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에 대해 부서의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되, 기준액을 3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각 단계의 경계지점에 인접해 있는 조직의 경우 정원 1~2명에 따라 금액 편차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구간을 세분화하여 금액편차를 최소화

현 행	개 정
<p>【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p> <p>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6. 10. 1기준)</p>	<p>【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p> <p>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정원수에 따라 편성(2017. 10. 1기준)</p>

현행			개정		
구분	기준액	비고	구분	기준액	비고
정원 5인이하 실·과 (신설)	월100,000원		정원 5인이하 실·과	월100,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신설)	월250,000원		정원 10인이하 실·과	월175,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신설)	월350,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250,000원	
정원 31인이하 실·과	5,000원 추가		정원 20인이하 실·과	월30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정원 25인이하 실·과	월350,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40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7 특정업무경비의 선택항목 지급대상 및 금액 자율결정 등 【별표 2】

- 공통필수항목은 현행을 유지하되, 선택항목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편성

※ 단,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예산(일반+특별)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현행	개정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현행			개정			
구분	대상	월액	구분	대상	월액	
선택항목	감사담당 공무원	▶시·도 감사실장 및 감사담당관(부산3급, 기타 시·도4급) ▶시·도, 시·군·구 감사업무담당공무원(5급이하)	100,000 80,000	선택항목 <삭제>	<삭제>	<삭제>
	세무담당 공무원	▶시·도 세무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 (과장이하) ▶읍·면·동 " (담당이하)	100,000 100,000 100,000			
	예산담당 공무원	▶시·도 예산담당 및 투자관리(심사)담당공무원(과장이하) ▶시·군·구 예산담당공무원(과장이하)	150,000 150,000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시·도 여론동향 전담공무원(5급이하) ▶시·군·구 " (6급이하)	100,000 100,000			
	공무원 단체담당 공무원	▶시·도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과장급) ▶시·도, 시·군·구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공무원(5급이하)	80,000 60,000			
	자치경찰 특수활동 경비	▶방법순찰, 안전사고, 재난재해, 주민보호 등 방법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교통안전, 교통소통, 교통법규위반 지도·단속 등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 경무 업무에 종사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 <신설>					

- 특정업무경비 중 대민활동비는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전임계약직 5급 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3.12.30)으로 전임계약직이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근무형태에 따라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제, 한시임기제로 구분되어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근무시간이 다를 수 있어, 실 근무시간에 맞게 지급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명시

현행			개정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별표 2】 6. 특정업무경비 ③ 기준액 (단위 : 원)			
구분	대 상	월액	구분	대 상	월액	
경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전임계약직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50,000	대 민 활동비	▶시·도 5급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
	구조 구급 활동비	▶소방파출소 구급요원, 구조대소 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	현행과 같음		
	방 호 활동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	현행과 같음		
	치안 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이하)	170,000	현행과 같음		
	특사 경수 사활 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현행과 같음		

8] 업무추진비 산정 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차별적 요소 개선 【별표 2】

-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 및 부서운영을 위해 정원수에 따라 편성하고 있으나
 -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이 동일한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원에 포함되지 않아 업무추진비 산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 개선

현 행	개 정
<p>【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p> <p>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u>총 정원수</u> (2016.10.1. 기준)</p> <p>※(신설)</p>	<p>【별표 2】 2. 정원가산업무추진비</p> <p>③ 적용기준 : 소속 공무원의 <u>총 정원수</u> (2017.10.1. 기준)</p> <p>※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p>
<p>【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p> <p>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u>정원수에 따라 편성</u> (2016.10.1. 기준)</p> <p>※(신설)</p>	<p>【별표 2】 5. 부서운영업무추진비</p> <p>② 기준액 : 시·도, 시·군·구 및 출장소·사업소의 전 실·과와 읍·면·동을 <u>정원수에 따라 편성</u> (2017. 10.1. 기준)</p> <p>※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산정대상에 포함 가능</p>

- 특정업무경비 예산편성 대상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이 제외되는 차별적 요소 개선

현 행	개 정
<p>【별표 2】 6. 특정업무경비</p> <p><단서 규정 내용></p> <p>1) <u>감사·세무·예산담당공무원 중 시·도의 지급대상은 관장업무가 경비지급 대상범위에 해당하는 실·과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자</u></p>	<p>【별표 2】 6. 특정업무경비</p> <p><단서 규정 내용></p> <p>1) <u>편성 대상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파견자 등) 직원도 적용 가능</u></p>

9]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관련 예산편성기준 삭제

- 업무추진비 부당집행으로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 익년도 예산편성 시 적발금액의 5배 이내의 기준액을 삭감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삭제

현 행	개 정
<p>① <u>대 상 : 행정안전부 및 감사원 감사, 또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사항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금액</u></p> <p><u>*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감액</u></p> <p>② <u>삭감기준 : 익년도 예산편성 시</u></p>	<p><삭 제 ></p>

현 행	개 정
<p><u>적발금액 5배 이내 기준액 삭감</u></p> <p>※ 다만, 삭감하는 예산액은 교부세 감액금액을 초과하여야 함</p> <p>③ <u>삭감방법 : 익년도 당해 자치단체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총액*에서 삭감</u></p> <p><u>* 총액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자체 기준액으로 산정된 금액</u></p> <p>※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업무추진비 삭감 대상 자치단체 및 삭감규모는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 통보'</p>	

10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대 【별표 3】

-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없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체로서 요건을 참조하여 개별 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

※ 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고금심의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현 행	개 정
<p>【별표 3】 1. 일반원칙</p> <p>③ 예산편성 원칙</p>	<p>【별표 3】 1. 일반원칙</p> <p>③ 예산편성 원칙</p>

현 행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u> ▶ <u>다음과 같은 단체에는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불가 원칙</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u> - <u>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u> - <u>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u> - <u>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축·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u> ※ <u>단,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u> ※ <u>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2018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u>

- 지방보조금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 한도액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p>【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p> <p>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p>【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p> <p>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운영)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별 편성한도액 설정 후 예산편성	- (운영) ----- ----- 사업별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지방의 활발한 일자리사업 발굴·시행을 위해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시 제외
 -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한 사업에 한함

현 행	개 정
<p>【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een;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2px;">보조금 총한도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준 : 일반+기타특별회계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임 </div> <p>▶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행사,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행사(전국체전 등)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p>	<p>【별표 3】 2.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②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een;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008000; color: white; padding: 2px;">보조금 총한도액</p> <p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0px 0;">현행과 같음</p> </div> <p>▶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칭펀드사업*지방비 부담분 포함) 등은 제외</p> <p>*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 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p> <p>▶(신설)</p> <p>▶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p>	<p>▶ <u>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u>은 총액 한도 대상에서 제외</p> <p>*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p> <p>▶ 현행과 같음</p>

11 월액여비, 기준경비에서 제외

- 자치단체 예산범위 내에서 실비 개념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으므로 기준경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월액여비의 유지 여부 등을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p>【별표 8】 월액여비</p> <p>① <u>경비성격 : 상시출장 공무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u></p> <p>② <u>기준액 : 월 150,000원 범위 내</u></p> <p>○ <u>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월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운영</u></p> <p>○ <u>다만, 출장 횟수와 거리 등을 감안하여 월 기준액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음</u></p>	<p><u>< 삭제 ></u></p>

12 행사·축제 경비, 기준경비에서 제외

-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는 기준경비를 특정한 한해(전전년도)의 최종예산 수준에서 원칙적으로 동결함으로써
 - 행사축제의 다양성 및 재정상황 등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4개 통계목을 대상으로 행사·축제 총액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모든 행사·축제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 있어 폐지
- ※ 다만, 행사·축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예규)」에서, ‘신규 편성시 사전심의’ 및 ‘모든 행사·축제 사업은 사후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 등 자율통제 유지

현 행	개 정
<p>【별표 9】 행사축제 예산 효율화 추진방안</p> <p>①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 설정·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액) '15년 최종예산 수준(11,423억원)에서 원칙적으로 동결 (이하 생략) 	<p>< 삭제 ></p>
<p>② 민간위원회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체계) (생략) ○ (사전심사) (생략) ○ (사후평가) (생략) 	<p>< 삭제 ></p> <p>※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반영 예정</p>

2

세출예산 과목 신설 (별표 11)

1 지방의회의원 역량개발비 신설

- 지방의회 의원의 위탁교육관련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향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역량개발비 편성목 신설

현 행				개 정			
【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 이므로 다음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200	205 의회비	1. ----- ----- 10가지----- ----- ----- ----- ----- -----	
		2.~ 4. (생략)				2.~ 4. (생략)	
		01. ~ 06. (생략)				02. ~ 0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그룹	편성목	설정 (통계목 포함)	비고
		<u>07. <신 설></u> <u>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u> 1. <u>사도의회, 사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체 부담금</u> <u>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1. (생략) <u>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1. (생략)				<u>07. 의원역량개발비</u> <u>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u> 1. <u>지방의원 위탁교육비</u> - <u>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u> ※ <u>단, 의원 개인적인 학위과정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u> 2. <u>지방의원 자체교육 강사료</u> - <u>자체교육에 초빙한 외래 강사료</u> ※ <u>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안에서 같은 과목내 별도 계상 가능</u> <u>08. 의장협의체부담금</u> 1. <u>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사도의회 의장 사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u> <u>09. 의원국민연금부담금</u> 1. (현행과 같음) <u>10. 의원국민건강부담금</u> 1. (현행과 같음)	

* 의장협의체부담금은 개선사항은 '3. 기타 보완사항' 참고

② 민간인위탁교육비 신설

-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에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을 위탁 교육 등으로 실시할 경우, 별도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교육비 신설

※ 예)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에 대한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비 등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생략) <u>< 신 설 ></u></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300 경상이전 307 민간이전 01~11 (현행과 같음)</p> <p>12. 민간인위탁교육비</p> <p>-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위탁기관에 지급할 위탁교육비</p> <p>※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1조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등</p>

3 기타 보완사항

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별표 11】

-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 취지를 고려,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한 임금 적용 내용을 삭제하고, 기타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법령상 용어 정비
 - ※ 국가도 시중노임단가 및 적정임금 인상율을 감안하여 편성토록 규정
- 불가피한 비상근무와 연장근로시간 중에 급식과 간식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현 행	개 정
<p>100 인건비</p> <p>101 인건비</p> <p>01~02 (생략)</p> <p>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p> <p>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p> <p>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p> <p>1) (생략)</p> <p>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p> <p>○ (생략)</p> <p>○ <u>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 기관이 공표한 <u>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u> 등을 고려하여 적용</u></p> <p>○ (생략)</p> <p>○ (생략)</p> <p>나.~다. (생략)</p> <p>라. 무기계약근로자의 <u>여비 및 급량비</u>, 국민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료부담금, 산업재해보험료</p> <p>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p> <p>가. 무기계약근로자 고용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u>고용계약서</u> 를 작성한 후 고용</p> <p>나. (생략)</p> <p>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p> <p>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p> <p>가. <u>인부임 및 간식비</u>, 부상치료비,</p>	<p>100 인건비</p> <p>101 인건비</p> <p>01~02 (현행과 같음)</p> <p>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p> <p>1.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p> <p>가. 무기계약근로자보수</p> <p>1) (현행과 같음)</p> <p>2) 기타 무기계약근로자</p> <p>○ (현행과 같음)</p> <p>○ <u>입금은 -----</u> ----- -----<u>노임단가</u> 등을 고려하여 적용</p> <p>○ (현행과 같음)</p> <p>○ (현행과 같음)</p> <p>나.~다. (현행과 같음)</p> <p>라. ----- <u>급량(간식)비</u>, ----- ----- -----</p> <p>2.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고용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편성</p> <p>가. ----- -----<u>근로계약서</u> 를 작성한 후 고용</p> <p>나. (현행과 같음)</p> <p>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p> <p>1.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p> <p>가. <u>인부임 및 급량(간식)비</u>, -----</p>

현 행	개 정
<p>피복비, 여비 등 근로자고용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 단, 사무보조근로자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의 근로자 임금은 계상할 수 없음</p> <p>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 임금은 사업완료후 <u>반드시 사역중단</u></p> <p>다.~라. (생략)</p>	<p>-----</p> <p>-----</p> <p>-----</p> <p>-----</p> <p>-----</p> <p>-----</p> <p>나.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 임금은 사업완료후 <u>근로관계를 종료</u></p> <p>다.~라. (현행과 같음)</p>

② 지방자치단체 국제부담금 편성 범위 확대

- 법령, 조약, 협정 외에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서도 국제기관 등에 부담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300 경상이전</p> <p>310 국외이전</p> <p>01. (생략)</p> <p>02. 국제부담금</p> <p>1. (생략)</p> <p>2. <신설></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300 경상이전</p> <p>310 국외이전</p> <p>01. (생략)</p> <p>02. 국제부담금</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국제부담금</u></p>

③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전세금’ 편성과목 변경

- 임차료 중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를 임차할 경우, 임차보증금

·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어,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전화가입권 등 법률상의 권리를 취득할 경우의 세출예산과목과 같이 기타자본이전 경비로 변경

※ 국가의 경우에도 무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p> <p>201 일반운영비</p> <p>6. 임차료</p> <p>가.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u>임차료</u>, <u>보증금</u>, <u>전세금</u></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p> <p>201 일반운영비</p> <p>6. 임차료</p> <p>가. ----- ----- <u>임차료</u></p> <p>※임대차계약에 의한 청사·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은 406(기타자본이전, 무형 고정자산)에 계상</p>
<p>400 자본지출</p> <p>406 기타자본이전</p> <p>1. 차관물자 용역대</p> <p>2. 건설가계정</p> <p>3. 무형고정자산</p> <p>가.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p> <p>-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는 401-01(시설비)에 계상</p> <p>- < 신 설 ></p>	<p>400 자본지출</p> <p>406 기타자본이전</p> <p>1. 차관물자 용역대(현행과 같음)</p> <p>2. 건설가계정(현행과 같음)</p> <p>3. 무형고정자산</p> <p>가. <u>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u></p> <p>- <u>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u></p> <p>※----- ----- -----</p> <p>- <u>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u></p>

현 행	개 정
나. (생략)	나.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규정 개선

①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규정 명확화

-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예산편성과 관련 현행 기준은 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만 열거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와 해석상 논란이 있어 부담금 편성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 등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생략)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생략)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u>광역자치단체간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대도시권행정협의회 부담금</u> 2)~4) (생략) 5) <u>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u> 6) (생략) 7) <u>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제55조의 2) 등</u></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 201 일반운영비 01. (생략) 02. 공공운영비 1. 공공요금 및 제세 가~바. (현행과 같음) 사. 법령 또는 협약에 의한 협회비 등의 부담금 1) <u>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부담금</u> 2)~4) (현행과 같음) 5) <u>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부담금(단 지방의회 관련 협의체는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으로 편성)</u> 6) (현행과 같음) 7) <u>한국폐기물협회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3) 등</u></p>

현 행	개 정
아. (생략) 2.~5. (생략)	아. (현행과 같음) 2.~5. (현행과 같음)

② 의장협의체 부담금 규정 명확화

- 의회비의 '의장협의체' 부담금 대상을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적법한 협의체로 명시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 205 의회비 07. 의장단협의체 부담금</p> <p>1. 사도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 205 의회비 08. 의장협의체 부담금</p> <p>1.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 중 사도의회 의장, 시군자치구의회 의장 협의체 부담금</p>

⑤ 전산개발비 편성기준 세부 내용 추가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시, 임의 편성 사례 방지를 위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편성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 추가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200 물건비</p>

현 행	개 정
<p>207 연구개발비</p> <p>01. (생략)</p> <p>02. 전산개발비</p> <p>1.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개발비</p> <p>- < 신 설 ></p> <p>2. (생략)</p>	<p>207 연구개발비</p> <p>01. (현행과 같음)</p> <p>02. 전산개발비</p> <p>1. ----- -----</p> <p>-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u>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u>”을 적용</p> <p>2. (현행과 같음)</p>
<p>400 물건비</p> <p>405 자산취득비</p> <p>01. 자산및물품취득비</p> <p>1.~5. (생략)</p> <p>6. < 신 설 ></p>	<p>400 물건비</p> <p>405 자산취득비</p> <p>01. 자산및물품취득비</p> <p>1.~5. (생략)</p> <p>6. <u>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H/W구입비</u></p> <p>-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u>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u>”을 적용</p>

6 포상금

-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 등에 따라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국내로 제한 규정 삭제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포상금 및 상여금 지급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모범공무원 <u>국내 산업시찰</u> 2.~ 4. (생략)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u><신 설></u></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300 경상이전 303 포상금 01. 포상금 1. ----- <u>산업시찰</u> 2.~4. (현행과 같음) 5. ----- ----- ----- ----- <u>(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u></p>

7 문화재 보호를 위한 문화재감리비 예산편성 근거 마련

- 감리비중 민간자본사업이 문화재감리의 대상이 될 경우,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품질제고 및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 감리를 지자체가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확화
- 감리비 예산편성기준에 '문화재 수리를 위한 감리비' 편성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
<p>【별표 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400 자본지출</p> <p>401 시설비 및 부대비</p> <p>01. (생략)</p> <p>02. 감리비</p> <p>1.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공사 <u>감리비</u></p> <p>2. 감리비는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 보수 기준 <u>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u></p>	<p>【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목그룹·편성목·통계목)」</p> <p>400 자본지출</p> <p>401 시설비 및 부대비</p> <p>01. (현행과 같음)</p> <p>02. 감리비</p> <p>1. ----- ----- ----- <u>감리비나 문화재 수리를 위한 감리비</u></p> <p>2. ----- ----- -----보수 기준, <u>문화재수리감리 대가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함</u></p>

4. 2018 예산안 편성 일정

- 2017. 8.10. 한도액(안) 및 예산부서 편성사업 목록 통보
- 2017. 8.11.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설명회 개최
- 2017. 8.16. 경상사업 요구
(인력운영비, 부서기본경비, 재무활동비, 법정경비)
- 2017. 8.23. 예산부서 편성 사업 요구
- 2017. 8.30. 실국신청 한도사업 요구
- 2017.10.13. 중앙지원 보조사업 요구
- 2017.10.26.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심의 완료
- 2017.10.27. 예산안 종합보고서 도지사 결재 완료
- 2017.11.10. 2018년도 예산안 도의회 제출

※ 2018 예산안 의회심의 일정

- 2017.11.15. 주요사업 설명자료 및 제안설명서 작성
- 2017.11.22. ~ 11.29.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 2017.11.30. ~ 12.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 2017.12.13. 예산안 의결
- 2017.12.22. 2018년도 예산 확정·고시